

PT GARUDA INDONESIA

운송약관 (승객 및 수하물)

1조 - 본 약관에서 사용된 특정 표현의 의미

(본 운송약관을 읽을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본 약관에서는 문맥상 달리 해석해야 하거나 그 외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표현들은 그 각각에 부여된 의미를 갖습니다:

“당사”, “당사의”, “당사 스스로” 및 “당사에게”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 (PT Garuda Indonesia (Persero) Tbk)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및 “여러분 스스로”는 항공권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항공기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자 (승무원 제외)를 의미합니다. (“승객”에 대한 정의 참조)

예정 기항지는 협약 및 본 약관의 목적상 ((9)조에 따라 항공사가 변경할 수 있음)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거나 승객의 경로 상 기항지로 예정된 바에 따라 항공사의 일정표에 표시되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항공사 지정 코드는 특정 항공 운송회사를 식별하는 2개의 기호 또는 3개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공인 대리점은 항공사의 항공 승객 운송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있어 항공사를 대리하도록 항공사가 지정한 승객 판매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수하물은 해당 여행과 관련해 승객의 착용, 사용, 안락함 또는 편리함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승객의 휴대품, 소지품 및 기타 개인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수하물에는 승객의 위탁 및 공인 대리점 수하물이 포함됩니다.

수하물 확인증은 항공권 중 승객의 위탁 수하물 수송과 관련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수하물 식별 태그”는 위탁 수하물의 식별을 위한 용도로만 발행된 문서를 의미하며, 수하물 식별 태그 번호, 항공편, 비행일, 출발지 공항, 목적지 공항, 수하물 중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송은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항공기로 승객이나 수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송회사는 당사의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항공기 지정 코드가 명시된 당사 이외의 항공운송

회사를 의미합니다.

항공운송회사 규정은 본 약관 외에 항공운송회사가 공시하는 규정으로 항공권 발행일에 유효한 승객 및 수하물 운송에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요금이 포함됩니다.

위탁 수하물은 승객이 기내로 반입하지 않고, 동일한 항공기로 항공사가 운송하기 위해 위탁받은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탑승수속 마감시간"이라 함은 탑승수속을 하고 탑승권을 수령하는 과정을 완료하도록 항공사가 고객에게 정한 시간 제한을 의미합니다.

도시 체크-인이란 승객이 탑승 48시간에서 4시간 전까지 가루다 인도네시아 영업부에서 탑승수속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추가 시설과 탑승수속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운송약관이란 본 운송약관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계약 조건은 항공권, 일정표/영수증에 포함되거나 이들과 함께 전달되어 확인되며, 참조로 본 운송 약관 및 통지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고객연락센터는 전화로 (021 2351 9999) 또는 (0 804 1 807 807)로 예약을 하거나 항공사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결합 항공권은 함께 단일 운송 계약을 구성하는 다른 항공권과 결합해 승객에게 발행되는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협약은 다음 중 적용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
-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 몬트리올 추가 프로토콜 1호에 의해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 헤이그에서 몬트리올 추가 프로토콜 2호에 의해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 헤이그에서 몬트리올 추가 프로토콜 4호에 의해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 1961년 9월 19일에 조인된 과달라하라 추가 협약
-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조인된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특정 규정의 통일을 위한 협약

쿠폰은 종이 탑승 쿠폰이나 전자 쿠폰을 의미하고, 각 쿠폰은 지정 승객에게 쿠폰에서 확인된 특정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동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피해라 함은 운송 또는 항공사가 운송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로 인해 또는 관련해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지연, 분실, 부분 손실 또는 모든 성격의 다른 피해가 포함됩니다.

“일”은 일주일 7일을 포함하는 역일 (曆日)을 의미합니다. 단, 통지를 목적으로 통지문이 발송되는 날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권이 발행되는 날 내지 운항이 개시되는 날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탑승 거부란 승객이 좌석이나 티켓의 확인하고, 항공기 좌석 부족으로 인해 지정된 시간에 탑승을 하지 못하거나 탑승이 거부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국내선이란 인도네시아 영토의 한 공항에서 다른 공항으로의 상업적 항공운송 활동을 의미합니다.

전자 쿠폰은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 항공 쿠폰 또는 다른 문서를 의미합니다.

전자 항공권은 항공사가 발급한 일정/ 영수증, 전자 쿠폰,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탑승 서류를 의미합니다.

탑승용 쿠폰은 중 “good for passage”(탑승 유효)라는 표시가 포함된 항공권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전자 쿠폰의 부분을 의미하며, 승객이 운송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 특정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불가항력”이라 함은 고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타당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환자 승객이란 현행 법률에 따라 감염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승객을 의미합니다.

무능력자 승객이란 승객의 육체적, 의학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탑승, 하기, 비행 중의 또는 지상 운용 중의 비상 대피 시), 일반 승객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개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승객을 말합니다.

국제선이란 인도네시아의 공항에서 외국의 다른 공항이나 외국의 공항에서 인도네시아의 공항으로의 상업적 항공 운송 활동을 의미합니다.

일정/영수증은 전자 항공권에서 승객을 위해 항공사가 발행하고, 승객의 이름, 운항편 정보, 예약 번호, 계약조건 및 공지사항이 포함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정신/ 신체적 상태란 승객이나 다른 승객의 편안함이나 안전을 방해할 수 있는 승객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연결 항공편이란 승객이 이전 비행편의 지연이나 취소로 인해 다음 비행편을 놓치고 2개의 비행편이 하나의 항공권에 (별도의 항공권이 아닌)에 표시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모바일 체크인 (Mobile Check-In)이란 승객이 비행 24시간 전부터 4시간 전까지 URL: m.garuda-indonesia.com을 통한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탑승수속을 가능하게 하는 항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시설 및 다른 탑승수속을 의미합니다.

승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권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승객명 기록 (PNR)은 승객이나 같이 여행하는 단체 승객의 일정을 포함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승객 쿠폰이나 승객 영수증은 항공사가 발행하고, 전술한 표시가 있고, 궁극적으로 승객이 소지하는 항공권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약이란 좌석이나 승객 또는 수하물 공간이나 중량을 사전에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DR (특별 인출권)은 여러 주요 화폐의 가치에 기초하여 국제통화기금 (IMF)이 규정한 국제 계산 단위를 의미합니다. SDR의 통화 가치는 변동되고, 매 은행 영업일에 재산정됩니다. 이러한 통화 가치는 대부분의 시중 은행 간부에게 통지되고, 주요 금융 저널에 정기적으로 보고됩니다.

도중 체류지 (stopovers)라 함은 항공권의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지점에서 24시간 이상 (국제선) 또는 12시간 이상 (국내선) 예정된 여행을 중단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도중 체류지는 사전에 항공사와 약정되고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합의된 기항장소 중에서 허용되고 정부 규제, 항공사 규정이나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도중 체류지에 대한 추가 요금은 항공사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환승이란 승객이 항공기나 다른 비행편으로 목적지 공항으로의 비행을 계속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공항에서 도중에 내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경유란 경유지 공항을 통해 동일한 항공기와 동일한 항공편으로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 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일부 승객이 내리고, 일부 다른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

운임 요율이란 필요한 경우 항공사가 관할 당국에 신고한 운송약관과 관련된 운임이나 요율을 의미합니다.

항공권이란 항공사가 발행하고 계약조건, 공지, 쿠폰을 포함하는 "여객 항공권 및 수하물 확인증"이라고 불리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공인 대리점 수하물(Unchecked Baggage)은 위탁 수하물을 제외한 승객의 모든 수하물을 의미함

니다.

웹 사이트란 승객의 온라인 예약과 항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www.garuda-indonesia.com를 의미합니다.

표제: 본 운송약관의 각 조의 제목이나 표제는 오직 편의만을 위한 것이며 본문의 해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조 - 적용

2.1 일반

2.2, 2.4, 2.5조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본 운송약관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 모든 항공편과 운행구간에 적용됩니다.

2.2 전세기 운항 및 비정기 상업 항공운송

전세 또는 비정기 상업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 운송약관은 해당 항공법에 따라 전세기 계약이나 비정기 상업 항공운송이나 항공권에 참조 등으로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2.3 공동 운항

일부 서비스의 경우 항공사는 "공동 운항(Code Shares)"이라고 부르는 다른 항공사와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는 승객이 항공사에 예약을 했고 항공사의 이름이나 항공사 지정 코드가 항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항공기는 다른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적용되는 경우, 항공사는 예약을 하는 시점에 승객에게 어느 항공사가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지 알려 주게 되고, 운항 항공사의 운송약관이 적용됩니다.

2.4 우선 법령

본 운송 약관은 항공사의 운임 요율 또는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의 운임 요율 또는 관련 법률에 우선합니다. 운송이 바르샤바 협약이나 몬트리올 협약의 대상인 국제운송에 해당되는 경우, 바르샤바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규정한 책임과 관련된 규칙과 제한이 계약상의 운송에 적용됩니다. 본 운송약관의 일부 조항이 준거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2.5 약관의 우선

1. 본 운송약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운송약관과 다른 항공사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단, 미국과 캐나다 내 현행 요금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요금이 우선합니다.
2. 본 운송약관은 약관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운송약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은 약관에 따른 운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3. 항공사는 약관 상의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보유하기 위해 실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2.6 언어

본 운송약관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지만, 본 운송약관의 언어는 영어와 인도네시아어이며,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만이 약관의 해석에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약관의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버전이 해석에 있어 상충되는 경우, 인도네시아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3조 - 항공권

3.1 일반 사항

3.1.1 항공사는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된 승객에게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승객은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항공권에 이름이 표시된 승객과 항공사와의 운송계약의 증거입니다. 항공사는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지급의 증거로서 항공사나 항공사의 공인 대리점이 발행한 다른 서류를 소지한 승객에게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공권은 항상 발행 항공사의 소유입니다.

3.1.2 항공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3.1.3 일부 항공권은 할인된 운임으로 판매되며, 이 경우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객이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운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승객은 자신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의 상황에 대비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3.1.3조에 설명된 대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을 소지하고, 불가항력으로 인해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항공사에 즉시 통지하고 불가항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1.4 항공권은 항상 발행 운송회사의 소유입니다.

3.1.5 전자 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은 항공편에 대한 탑승용 쿠폰 및 기타 사용하지 않은 탑승용 쿠폰과 승객용 쿠폰이 포함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해당 항공편을 이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제시된 항공권이 훼손되었거나 항공사 또는 항공사의 공인 대리점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변경된 경우 승객은 항공편을 이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자 항공권의 경우 승객이 확실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유효한 전자 항공권이 승객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발권되지 않았다면 승객은 해당 항공기로 운송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3.2 항공권 분실

3.2.1 승객이 국제선 항공권 (또는 일부)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승객용 쿠폰과 사용하지 않은 승객용 쿠폰이 포함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항공사는 새 항공권을 발권하여 해당 항공권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교체해 줍니다. 단, 해당 항공편에 대한 유효한 항공권이 정식 발권되었다는 확인이 가능한 증거가 있고, 항공권의 오용으로 인해 항공사 또는 다른 항공사에게 초래되는 합리적인 모든 비용과 손실에 대해 원래 항공권의 금액까지 배상하겠다는 계약에 승객이 서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항공사는 항공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

해 승객에게 보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분실이나 훼손이 발권 항공사 또는 대리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발권 항공사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관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2.2 승객이 국내선 항공권 (또는 일부)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승객용 쿠폰과 사용하지 않은 승객용 쿠폰이 포함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항공사는 환불절차를 진행합니다. 단, 단, 해당 항공편에 대한 유효한 항공권이 정식 발권되었다는 확인이 가능한 증거가 있고, 항공권의 오용으로 인해 항공사 또는 다른 항공사에게 초래되는 합리적인 모든 비용과 손실에 대해 원래 항공권의 금액까지 배상하겠다는 계약에 승객이 서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항공사는 항공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승객에게 보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분실이나 훼손이 발권 항공사 또는 대리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발권 항공사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관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2.3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유효하지 않거나, 승객이 배상에 관한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새 항공권을 발급하는 항공사는 대체 항공권에 대해 전체 항공권 가격을 지급하도록 승객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분실 내지 훼손된 항공권이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래의 발권 항공사가 확인하면 상기 규정에 따라 지불된 금액은 환불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원래 항공권을 찾은 경우 승객이 새 항공권을 발권한 항공사에 원래 항공권을 제출하면 전술한 환불이 즉시 처리됩니다.

3.2.4 항공권은 금전적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승객은 항공권의 안전을 도모하고, 분실 또는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2 유효기간

3.2.1 정상적인 일방 편도, 왕복 또는 일주 여행 요금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비행 개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항공권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항공권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발행일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3.2.2 항공권의 하나 이상의 쿠폰이 당일 여행 또는 위에 표시된 것보다 항공권 유효기간 보다 짧은 다른 특별 요금과 관련된 경우, 짧은 유효기간은 해당 당일 여행이나 특별 요금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3.2.3 변경된 경로로 인해 발권되는 새로운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새로운 항공권이 원래 항공권 판매 일자에 발권되었다면 적용되었을 만료일로 제한됩니다.

3.2.4 정상 또는 특별 요금과 관계없이 각 쿠폰에 따른 여행은 출발 공항의 자정 이전에 또는 해당 쿠폰의 만료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3.2.5 승객이 예약을 요청할 때, 항공사가 예약을 확인할 수 없어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하지 못할 때, 해당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승객이 10조에 따라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2.6 승객이 여행을 시작한 이후에 질환상의 이유로 항공권 유효 기간 내에 여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항공사는 해당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승객이 여행에 적합한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는 날짜까지 연장하거나 상기 날짜 이후로 운임이 지불된 해당 서비스 클래스에 좌석이 마련되어 여행 재개가 가능한 항공사의 첫 번째 항공편이 제공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진단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항공권에 남아 있는 탑승용 쿠폰 또는 전자 항공권에 남아 있는 전자 쿠폰에 1개 이상의 기착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증서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최장 3개월까지 항공권의 효력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공사는 승객이 동행하는 다른 직계 가족의 항공권 유효 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합니다.

3.2.7 항공사가 해당 승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취소하는 경우, 승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경유지와 같은 예정된 착륙을 생략하는 경우, 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승객이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만드는 경우, 다른 클래스의 서비스로 대체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여 항공권 유효 기간 내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사항에 적용되는 약관에서 항공사에게 승객 탑승권의 전액 환불을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승객이 소지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요금 결제가 이루어진 클래스에 여유 좌석이 있는 첫 항공편 시점까지 연장됩니다.

3.2.8 여행 도중에 승객이 사망하는 경우 승객과 동행하는 사람의 항공권은 최소 체류 기간의 포기 또는 효력 연장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승객의 직계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승객의 항공권 및 승객과 동행하는 직계 가족의 항공권에 부여된 효력은 동일하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은 유효한 사망 증명서가 수령되는 즉시 실행되며, 전술한 효력 연장 기간은 사망일부터 45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3 신분

항공사는 항공사나 항공사의 공인 대리점이 발행한 항공권에 표시된 (또는 운송료 지급의 증거로 다른 서류를 소지한) 승객에게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4. 쿠폰 순서 및 사용

3.4.1 승객이 구입한 항공권은 출발지를 떠나 합의된 기착지를 경유하여 최종 도착지에 이르는 항공권에 표시된 운송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승객이 지불한 운임은 항공사의 운임 요율에 근거하며, 항공권에 표시된 운송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는 항공사가 승객과 체결한 계약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쿠폰이 항공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사용되지 않으면 항공권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효력을 잃게 됩니다.

3.4.2 승객은 운송 관련 사항을 변경하기 원하는 경우 항공사에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변경된 새로운 운송에 대한 운임이 산정되어야 하고, 승객은 새 가격을 수락할지 아니면 원래의 운송 조건을 발권된 대로 유지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승객의 운송 관련 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승객은 가급적 빨리 항공사에 연락해야 하고, 항공사는 운임의 재산정 없이 승객을 다음 기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에 운송하도록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4.3 승객이 항공사의 동의 없이 운송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의 실제 여행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합니다. 승객은 이미 지불한 가격과 승객의 변경된 운송에 적용되는 총 가격과의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격이 더 낮은 경우 항공사는 차액을 승객에게 환불합니다. 미사용 쿠폰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3.4.4 일부 유형의 변경이 운임을 변경시키지 않는 반면, 출발지 변경이나 (예를 들면, 첫 번째 구간을 비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 코스를 뒤바꾸는 경우와 같은 다른 사항들이 요금 인상을 초래될 수 있음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많은 특별 운임이 항공권에 명시된 날짜 및 항공편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변경되지 못하고,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4.5 항공권에 포함된 각 탑승용 쿠폰은 항공사의 운임 요율에 따라, 요청한 비행편의 공간이 있는 경우 좌석이 예약된 날짜와 항공편의 서비스 등급으로 운송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3.4.6 승객이 항공사에 사전 통지 없이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는 귀국 항공편이나 연결 항공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이 사전 통지한 경우 항공사는 연결 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3.5 항공권 상환 (마일리지)

항공권 상환 (Garuda Miles 마일리지 교환의 경우만)은 Garuda Miles 회원의 누적 마일리지 점수의 교환입니다. 항공권의 재매입을 위해서는, 승객이 연락처나 항공사 판매 대리점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마일리지로 승객은 약관에 따라 항공사의 항공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3.6 운송회사의 이름과 주소

항공사의 이름은 항공사 지정 코드 또는 항공권에 약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본사 주소는 Garuda PT Garuda Indonesia (Persero) Tbk., Jalan Kebon Sirih No. 44 Jakarta 10110, Indonesia입니다.

- 당사의 경영본부 주소는 PT Garuda Indonesia (Persero) Tbk., Management Building, Garuda City Center, Jalan M1,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 Cengkareng 19120, Tangerang, Indonesia P.O. BOX 1004입니다.

4조 - 요금, 세금, 수수료 및 비용

4.1 요금

운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의 운항에 대해 적용됩니다. 운임에는 공항간 또는 공항과 시내 터미널간의 육상 운송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금은 항공권에 표시된 특정 날짜와 일정표의 여행에 대한 항공권 금액을 지불한 날짜에 유효한 운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정표 내지 여행 날짜를 변경할 경우 지불할 운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지상 운송서비스 운영회사의 행위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따라서 승객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어 항공사 직원이나 대리인이 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공사가 지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운송약관이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고, 항공사 규정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추가 요금은 승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4.2 적용 운임

본 약관의 적용 대상인 운송 요금은 항공사가 직접 또는 항공사를 대신해 공지되는 요금이며, 공지되지 않는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부 요건 및 항공사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 요금은 해당 항공권의 첫 항공편 쿠폰의 적용 대상인 운송의 개시일에 발효되는 항공편 요금,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일정/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첫 항공편 구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운송의 개시일에 발효되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결제된 금액이 적용 요금과 다른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승객이 그 차액을 지불하거나 고 항공사가 차액을 승객에게 환불합니다.

4.3 유아

생후 21일부터 2세 (24개월)까지의 유아에 대한 요금은 (여행일 기준) 수수료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아는 성인의 무릎에 앉아서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 1명당 1명의 유아가 허용됩니다. 유아차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탑승이 허용되는 최대 유아의 수는 좌석의 10%이며 좌석은 항공사가 배정합니다.

4.4 세금, 수수료 및 요금

승객은 정부 또는 기타 관련 당국이나 공항 운영회사가 부과하는 관련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승객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에 포함되지 않은 세금,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며, 이들 대부분은 대체적으로 항공권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항공 여행에 부과되는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은 지속적으로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 이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에 표시된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승객은 증가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항공권이 발권된 이후에 새로운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승객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항공권 발권 시점에 승객이 항공사에 지불한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이 폐지되거나 줄어들어 더 이상 승객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지불할 금액이 축소된 경우 승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5 경로

항공사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금은 그와 관련해 공시된 경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동일한 요금에 여러 개의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승객은 항공권 발행 전에 해당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로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항공사가 경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6 통화

항공사 또는 공인 대리점이 지불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다른 통화를 지정하지 않는 한 (예를 들면, 현지 통화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운임,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은 항공권이 발권된 국가의 통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에 따른 환율로 항공사 재량에 따라 다른 통화로 지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4.7 정확성

공지된 모든 운임, 가격, 일정, 경로 및 서비스는 공지 당시에 정확하며 사전 통지없이 수시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8 기타 요금

항공사는 지상 운송서비스 운영회사의 행위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따라서 승객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어 항공사 직원이나 대리인이 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공사가 지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운송약관이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고, 항공사 규정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추가 요금은 승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5조 - 예약

5.1 예약 요건

5.1.1 항공사 또는 공인 대리점은 승객의 예약을 기록하고, 승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항공사는 예약에 관한 서면 확인을 승객에게 제공합니다.

5.1.2 일부 운임에는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권리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5.1.3 승객은 승객의 이름, 주소/ 호텔, 개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예약, 항공권 매입, 부가 서비스 이용,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출입국 절차 편의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항공사는 이러한 데이터를 승객의 여행과 관련된 정부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5.1.4 항공사는 승객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클레임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2 예약 확인

좌석 예약은 운임을 항공사가 수취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5.3 비행편 변경

예약 참조번호가 발행된 후에는, 비행편 변경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릅니다.

예정된 출발시간 24시간 내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정된 비행시간 24시간 전의 비행편

변경에 대한 요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수수료 별표에서 제공됩니다.

- a. 더 낮은 운임이 가능한 경우에도, 요금의 차액은 승객에게 환불되지 않습니다.
- b. 예약한 새로운 항공편이 취소한 예약 항공편 보다 높은 요금의 등급일 경우, 승객은 취소나 변경 전에 요금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c. 변경은 항공사가 새로운 일정이나 예약 참조번호를 발행할 때까지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 d. 경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e. 유효한 신분증이나 여행서류에 따라 항공권의 이름을 수정하는 것은 스펠링의 오류가 3자 이하인 경우 환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항공편 변경 절차로, 항공사 발권 사무실이나 공인 대리점 또는 항공사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여 탑승권상의 승객 이름, 항공권 번호, 실제 휴대폰 번호와 같은 정보를 항공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5.4 지급

운임은 예약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약을 확인할 때 운임이 어떤 이유로든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항공사는 탑승수속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항공권을 매입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를 탑승수속에서 확인하기 위해 소지자가 탑승수속을 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승객인 본 조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하고 탑승권과 운송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승객이 예정된 마감시간 이전에 탑승권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나 그 공인 대리점이 통지한 내용과 같이 항공사는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5 개인 정보.

승객은 여행과 관련하여 예약, 항공권 구매, 부가 서비스 획득,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출입국 절차 간소화, 정부 기관에 관련 데이터 제공 등의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 (승객 이름, 주소/ 호텔, 개인 휴대폰 번호, 이메일 포함)를 승객에게 제공하고, 해당 정부기관은 다른 정부기관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승객은 이러한 데이터를 항공사가 보유하거나 자체 사무실, 공인 대리점, 정부기관, 다른 운송업체나 위에 언급된 서비스 제공 기관들에게 전송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항공사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사기를 방지/ 예방하고, 훈련을 위해 승객과의 전화 대화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5.6 좌석 배정.

5.6.1 항공사는 미리 요청된 좌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특정 좌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5.6.2 승객은 자신의 탑승권에서 배정된 좌석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항공기 탑승 이후에도 언제든지 좌석을 배정 또는 재 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운항,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5.6.3 사전에 스스로 장애가 있음을 밝히는 승객의 경우, 항공사는 내부 및 외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좌석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5.6.4 이는 운영, 안전, 정부 규제, 보건이나 보안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스스로 장애가 있음을 밝히는 승객의 경우, 항공사는 비상구 근처에 좌석을 배정할 수 없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좌석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5.7 재확인

5.7.1 비행경로나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한, 승객은 비행편을 재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5.7.2 승객은 자신의 일정에 관련된 다른 운송업체의 재확인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재확인을 해야 합니다. 운송업체 코드가 승객의 각 비행편에 대해 부여됩니다.

5.8 예약의 취소

5.8.1 승객이 항공사에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고, 항공편에 맞춰 도착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승객의 귀국편 예약 또는 연결편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8.2 승객이 항공사에 한 장의 항공권에 모든 비행편을 예약하는 경우, 승객은 비행편의 하나라도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운송업체는 하나의 항공권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권이 별도로 발권된 경우, 승객은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5.8.3 연결편이 다른 항공사인 경우, 항공사는 승객이 별도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연결편 비용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5.7 사전 약정

장애, 영구 또는 일시적 이동성의 제약이 있는 승객이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 승객은 필요한 도움이나 이동성 보조 기구의 운송과 관련된 내역을 적어도 48시간 전에 항공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예정 출발시간 48시간 전에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공사는 도움을 주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탑승수속 전에 여행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공사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유아, 임신부나 질병이 있는 승객을 운송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승객은 장애인이나 기타 특별 지원이 필요한 다른 승객에 대한 사전 약정의 모든 조건을 준수할 것을 본 약관에서 동의합니다.

가능한 경우, 승객은 예정 출발시간 이전에 사전 좌석 요청 (ASR)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ASR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수료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SR이 매입되는 경우, 항공사는 좌석을 배정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한 후에도 좌석을 재배정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운영, 안전,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통로, 창가, 출구열이나 다른 유형의 좌석과 관계없이 특정한 좌석의 재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급된 좌석 배정을 존중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ASR을 성공적으로 매입하고 통제할 수 없거나 상업적인 이유나 안전상의 이유로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항공사는 재량으로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 다음 비행편에 동일한 ASR에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b. 다음 비행편의 동일한 가치의 ASR에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c. 항공사가 ASR 대금을 환불하고 다음 비행편에서 무작위로 배정된 좌석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조항에서 설명한 선택권은 승객에게 제공되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이며, 항공사는 승객에게 추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10 경유지

경유지는 정부 요건과 항공사 규정에 따라 합의된 기착지에서 허용됩니다.

6조 - 탑승수속, 탑승 및 기타 운송요건

6.1 국내 항공편에 대한 항공사의 탑승수속 창구는 예정 출발시간 2시간 전부터 열립니다. 국제선 항공편의 탑승수속 창구의 경우 예정 출발시간 3시간 전에 열립니다. 항공사 탑승수속 창구는 예정 출발시간 30분 전부터 폐쇄됩니다.

6.2 승객이 탑승수속 마감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비행 30분 전까지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의 비행편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공사나 그 공인 대리점은 탑승수속 마감시간을 통지할 것입니다. 탑승 수속 마감 시한은 공항마다 다르므로 탑승 수속 마감 시한을 숙지하고,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6.3 승객은 탑승 수속시 탑승권에 명시된 시간 이전에 탑승구에 도착해야 합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탑승구는 출발 10분전에 닫힙니다. 승객이 정해진 시간 내에 항공사의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여행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승객은 "No Show" 승객으로 간주되며, 항공사는 승객의 수하물을 항공기에서 빼내고, 적하목록에서 승객의 이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6.4 승객이 정시에 탑승 수속을 하지 않거나 항공기가 출발할 때까지 탑승하지 못할 경우, 승객이 지급한 운임은 어떤 이유로든 환불되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승객이 정시에 탑승구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승객의 예약 좌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본 운송약관이 적용되는 도시 체크인 (City Check-In) 및 모바일 체크인 (Mobile Check-In) 과 같은 항공사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 항공사는 승객이 정시에 탑승 수속을 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을 경우 비행편의 출발을 지연하지 않으며, 승객이 탑승 수속 마감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시에 탑승수속에 도착하지 않거나 정시에 탑승구에 있지 않을 경우, 승객이 입은 손해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운송거부 권리에 적용되는 본 운송약관의 다른 규정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항공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승객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납부한 운임을 반환하지 않고, 탑승수속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a. 승객이 적어도 예정 출발시간 30분 이전에 탑승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 b. 승객이 적절한 신분증이나 달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c. 승객이 특정 장소나 국가로 여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서류, 허가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d. 승객이 운임 또는 항공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다른 수수료나 비용을 전액 지급하지 못할 경우
- e. 승객이 항공사의 직원에게 폭력을 사용했거나 항공사 창구에서 문제를 야기하거나 물리적 또는 언어로 항공사 직원에게 욕을 한 경우
- f. 정부나 다른 당국이 승객의 탑승 수속이나 탑승을 금지하는 경우
- g. 항공사가 승객이 음주나 명백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여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h. 항공사가 승객이 의료적으로 여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승객의 약물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다른 승객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6.6 항공사가 이전에 확인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 a. 추가 비용없이 공간이 허용되는 곳에서 다른 서비스로 승객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b. 승객이 다른 서비스로 여행을 원하는 경우, 항공권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6.7 준수

승객은 출발, 도착, 경유지 국가의 모든 법률, 조례, 요구, 요건을 준수하고, 본 운송약관, 항공사가 제공하는 공지나 지시를 준수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항공사는 필요한 서류의 취득이나 구두나 서면 등의 이러한 법률, 규정, 조례, 요구, 요건, 지시를 준수할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해당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해당 법률, 규정, 조례, 요구, 요건,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6.8 여행 서류

여행 전에, 승객은 출발, 도착, 경유지 국가의 모든 법률, 조례, 요구, 요건에서 요구하는 모든 출입국, 보건 및 기타 서류를 취득하고, 소지하고, 관련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항공사는 이러한 법률, 조례, 요구,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6.9 입국 거부

승객인 다른 국가로의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승객은 항공사가 정부나 출입국 당국의 명령에 따라 환승 또는 목적지에서 승객에 대한 입국 거부로 인해 승객이 자신의 출발지로 돌아가도록 할 때마다 해당 운임이나 벌금 또는 과징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공사는 거부 지점 또는 입국이 부인된 지점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6.10 과징금, 보관 비용 등

승객이 출발, 도착, 경유지 국가의 모든 법률, 조례, 요구 또는 여행 요건을 준수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항공사가 벌금이나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예치하거나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객은 요청이 있는 경우 발생하거나 지급한 또는 지급할 금액을 항공사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이러한 지급이나 지출에 대해 승객이 사용하지 않은 운송 가치나 승객이 소지하는 자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6.11 세관 검사

필요한 경우, 승객은 세관이나 다른 정부 담당자의 승객 수하물 검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승객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입은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12 보안 검사

승객은 항공사, 정부 관계자, 공항 관계자나 다른 운송업체가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사를 실시하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이러한 보안검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이러한 요건을 승객이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승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13 승객 검사

해당 법률, 정부 규정, 요구, 명령이나 요건에서 항공사가 해당 승객에 대한 운송을 거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항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객은 자신에 대한 검사로 인해 발생한 법률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관할 정부 당국이 항공사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6.14 항공사는 승객이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조 - 운송 거부 및 제한

7.1 운송을 거부할 권리

항공사는 안전 상의 이유로, 또는 합당한 재량을 발휘해 다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체 승객 또는 승객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7.1 운송 거부권

항공사가 통지일 이후에 승객을 항공사 항공편으로 운송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항공사는 재량에 따라 승객 또는 승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객은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항공사는 재량으로 승객 또는 승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7.1.1 정부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조치가 필요한 경우

7.1.2 정부가 요청한 정보를 포함하여 승객 정보나 승객 정보 서류에 대한 항공사의 요청을 승객이 거부하는 경우

7.1.3 승객 또는 승객의 수하물 운송이 안전과 건강을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혹은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7.1.4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한 손상으로 인해 승객, 다른 승객, 승무원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상태나 재산에 대한 유해나 위험을 초래하는 등 승객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해당 승객이나 다른 승객을 불쾌하게 하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승객의 건강 상태 (물리적/ 정신적)가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의심되는 경우, 항공사의 보건팀의 의료 승인이 요구됩니다. 의료진의 평가를 기준으로, 의료 에스코트가 요구되거나 승객의 여행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의 전체는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7.1.5 승객이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거짓 신고를 하거나 다른 안전이나 보안, 위협이 되는 경우

7.1.6 승객이 탑승 수속, 탑승 과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7.1.7 승객이 이전 비행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러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7.1.8 승객이 승무원이나 항공사의 재산을 포함한 안전이나 보안과 관련된 항공기 승무원이나 지상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7.1.9 승객이 지상 인력,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위협적, 비하적인 언어나 욕설을 하는 경우

7.1.10 승객이 지상 인력이나 승무원에게 위협적, 비하적, 모욕적 또는 질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7.1.11 승객이 자신이나 자신의 수하물을 보안검색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제출한 경우에도 탑승 수속이나 탑승구에서 보안 관련 질문에 만족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보안 신고 평가나 분석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수하물의 보안 인장이나 탑승권의 보안 스티커를 훼손하거나 변조한 경우

7.1.12 승객이 운임, 세금, 수수료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1.13 승객이 일정이나 예약이 위조이거나 불법적으로 획득하였거나 운임의 지급이 허위인 경우

7.1.14 승객이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환승지 국가에 입국을 시도할 수 있거나,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비행 중에 본인의 여행 서류를 폐기할 수 있거나, 또는 항공사가 요청했을 때 항공기 승무원에게 여행 서류를 승무원에게 제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7.1.15 승객이 불법적으로, 또는 항공사나 공인 대리점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항공권, 또는 분실이나 도난 된 것으로 신고되거나 위조 항공권을 제시하거나 승객이 항공권에 표기된 승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7.1.16 승객이 쿠폰 순서 및 사용에 관한 3.4조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항공사 또는 공인 대리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행 또는 변조된 항공권을 제시하거나, 혹은 항공권이 훼손된 경우

7.1.17 탑승 수속을 하거나 탑승하는 자가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된 승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항공사는 해당 항공권을 보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7.1.18 승객이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여행하려는 국가나 경유지 국가의 출입국 당국이 항공사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승객을 자신의 국가로 입구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는 경우

7.1.20 승객이 이전에 탑승한 항공편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된 작위 내지 부작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거나 항공사기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 경우

7.2 특별 지원

7.2.1 보호자 없는 어린이, 유아, 장애인, 임산부, 환자 또는 특별 지원이 필요한 자의 운송은 항공사와 사전에 합의되어야 합니다. 발권 당시에 특별 요구 사항을 항공사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은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 또는 특별 요구 사항을 이유로 운송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7.2.2 보호자 없는 어린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전 협의의 대상이며,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보호자 없는 어린이와 장애인의 총 수는 항공기 승객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2.3 특별 필요성/ 이동 문제/ 의료 조건이 있는 승객

a.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사는 사지 또는 하반신이 마비된 승객을 비행당 최대 4명까지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단, 항공사는 사지가 마비된 환자의 경우 비행당 2명 이상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항공사는 보호자가 승객과 같이 여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b. 질병이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승객은 비행에 적합하다는 진단서를 탑승 수속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는 감염성, 전염성 또는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c. 항공사는 승객이 비행에 안전하다는 것을 완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예약 전에 자신이나 다른 승객의 비행을 안전하게 하지 못하는 질병, 질환이나 다른 조건을 항공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d. 탑승 중에 의약품이나 주사를 투여하거나 소지해야 하는 승객을 포함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장애나 질병과 같은 특별한 요건이 있는 승객은 적어도 예정된 비행기 출발 48시간 전에 항공사 콜 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지원 유형에 대해 항공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산소통이나 들것이 필요한 승객은 적어도 예정된 비행기 출발 48시간 전에 항공사 콜 센터에 연락하고, 1명의 의료진이 동반해야 합니다. 승객은 의료 보조원, 산소통, 들것 및 승객이 병으로 인해 누워서 여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좌석의 준비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기간 내에 항공사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 승객이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승객이 운송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발권 당시 특별 요건을 항공사에게 통지하고, 항공사가 인정한 장애가 있는 승객은 이러한 장애나 특별 요건으로 인해 탑승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단, 운송업체의 규정이나 정부의 규정이 장애가 있는 승객의 운송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로, 특별 요건이 있는 승객은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해야 합니다.

7.2.4 동반자와의 여행

항공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승객이 동반자와 같이 여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항공사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b. 승객이 도움 없이 항공기에서 대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 승객이 안전 관련 조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

당 항공사로 여행할 때, 6세 이하의 아동은 미성년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1명의 성인이 동반해야 합니다.

7.2.5 임산부

임산부는 좌석 예약 및 탑승 수속을 할 때 임신 상태에 대해 항공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 항공사의 임산부 운송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최대 임신 34주 (포함): 항공사는 임신한 주의 수와 승객이 여행에 적합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승객이 여행하는 날부터 적어도 30일 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임신한 승객은 책임제한확인서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b. 35주차 이상 임신: 항공사는 이러한 경우 승객의 비행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7.2.6 출생 후 20일 이내의 유아: 항공사는 20일 이하의 유아를 운송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항공사는 재량에 따라 의사가 서면으로 운송을 명확하게 허가하거나 유아의 부모가 책임제한확인서에 서명하는 경우 유아의 비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사가 운송하는 유아의 수는 항공기 승객정원의 1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3 재소자에 대한 특별 지원

재소자나 허가된 법률 집행관이 동반한 자의 운송은 항공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8조 - 수하물

8.1 무료 수하물 허용

승객은 항공사의 조건 및 제한에 따라 수하물을 무료로 운반할 수 있으며, 이는 항공사 또는 공인 대리점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8.2 초과 수하물

승객은 무료 수하물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하물 운송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금 정보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8.3 수하물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8.3.1 승객은 수하물에 다음 품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8.3.1.1 폭발물, 압축 가스, 부식물, 산화 방사성 또는 자기화 물질, 인화성 액체, 젤이나 쉽게 인화되는 물질, 독극물, 불쾌감을 주거나 자극적인 물질 및 액체 (여행 중 본인 사용 용도로 휴대 수하물의 액체 제외), 또는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위험 물품 규정 및 항공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 (추가 정보는 요청시 항공사가 제공)을 포함하여 항공기나

탑승하거나 적재된 승객 또는 재산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 승객이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항공사는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8.3.1.2 항공편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의 해당 법률,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운송 금지 대상인 품목

8.3.1.3 중량, 크기, 모양 또는 성질로 인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못하여 항공사가 운송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품목, 혹은 이용되는 항공기의 유형상 깨지거나 부패하기 쉬운 것으로 간주되는 품목.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관한 정보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8.3.2 사냥 및 스포츠용이 아닌 소형 화기와 탄약은 수하물로서의 운송이 금지됩니다. 화물이나 위탁 수하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냥 및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소형 화기와 탄약은 비장전 상태에서 안전 결쇠가 장착되고,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탄약 운반은 8.3.1.1조에 명시된 ICAO 및 IATA 규정, 관련 법률과 규정 및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8.3.3 골동품 화기, 검, 칼 등의 무기와 유사 품목은 항공사의 재량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허용될 수는 있으나 기내에 반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무기가 위탁 수하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보안 품목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8.3.4 승객은 돈, 보석, 귀금속, 컴퓨터, 개인용 전자 기구, 유통 증권, 유가 증권 내지 기타 유가물, 업무 문서, 여권 및 기타 신원 확인용 문서, 샘플, 약, 의약품, 문화재, 원고 등을 위탁 수하물 안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8.3.5 8.3.1조, 8.3.2조 및 8.3.4조에 명시된 금지 품목이 수하물에 포함된 경우 항공사는 해당 품목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승객이 깨지기 쉬운 품목이나 귀중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기를 권합니다.

8.3.6 운송회사는 8.3.4조에 규정된 조항을 포함하여 위탁 수하물에 보관된 승객의 귀중품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클레임에서 면제됩니다.

8.4 운송 거부권

8.4.1 항공사는 8.3.2조 및 8.3.3조에 따라 8.3조에 명시된 품목을 수하물로 운송할 것을 거부하며, 이러한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 이후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4.2 항공사는 크기, 모양, 중량, 내용물, 특성 또는 안전이나 운항상의 이유에 근거하거나 다른 승객의 편의를 위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수하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8.4.3 적합한 용기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포장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사는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가 허용하지 않는 포장과 용기에 대한 정보는 요청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8.5 검색권

항공사는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검색, 탐색하고, 승객의 수하물을 검색, 탐지 또는 X-선 검사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승객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없는 경우에도, 8.3.1조에 명시된 품목, 소형 화기, 탄약, 무기, 8.3.2조 또는 8.3.3조에 따라 항공사에 제시되지 않은 품목 등이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승객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하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색 또는 탐지가 승객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X-선 또는 탐지가 승객의 수하물을 손상시키는 경우 항공사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항공사는 그러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전 규정에 따라 승객은 모든 승객으로부터 포장 물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8.6 위탁 수하물

8.6.1 항공사는 위탁 대상 수하물이 항공사에 전달되는 즉시 해당 수하물을 접수하고 위탁 수하물 각각에 대해 수하물 식별 태그를 발행합니다.

8.6.2 수하물에 이름, 이니셜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수하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식별 목적을 위해 수하물에 적절하고 정확하게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수하물에 이름, 이니셜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 승객은 접수 전에 수하물에 식별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8.6.3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승객과 동일한 항공기를 통해 운송됩니다. 단, 해당 법률에서 통관을 위해 승객이 참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항공사가 안전, 보안이나 운영상의 이유로 동일한 항공기에 수하물을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공사는 여유 공간이 있는 다음 항공편을 통해 해당 위탁 수하물을 수송합니다.

8.6.4 항공사는 20kg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한도를 제공합니다. 20kg을 초과하는 화물은 수수료 별표의 요율로, 항공사 탑승 수속 창구에서 제공되는 운송업체 규정에 규정된 방법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8.6.5 유모차는 무료로 운반되지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수하물 허용 한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8.6.6 승객은 동일한 일정으로 여행하지 않는 한 다른 승객의 미사용 위탁 수하물 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행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으로서 동일한 일정으로 예약한 승객은 동일한 일정의 여행을 하지 않는 승객의 미사용 위탁 수하물 한도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8.6.7 스포츠 장비는 수수료 별표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급한 후 자신의 위험으로 항공기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승객은 해당 품목에 대해 필요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8.7 기내 반입 수하물

8.7.1 항공사는 승객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의 최대 크기 또는 중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수하물은 앞 좌석 아래 공간에 들어가거나 기내 보관함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하물을 보관할 수 없거나, 너무 무겁거나, 기타 사유로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8.7.2 화물칸에 운반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정교한 악기와 같이), 8.7.1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물품은 승객이 사전에 항공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기내 보관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8.7.3 승객 (유아 제외)은 무료로 2개의 수하물 품목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단,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무료 반입 수하물은 다음의 2개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가방 또는 노트북 컴퓨터 가방 또는 핸드백. 기내 반입 가방은 58cm x 46cm x 23 cm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량이 7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지 법률과 보안 규정에 따라, 승객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액체를 반입 수하물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a. 액체가 최대 100ml의 부피의 용기에 있는 경우

b. 각각 100ml의 부피를 충족하는 모든 액체 용기가 투명, 재밀봉이 가능한 1리터 비닐 백에 포장되는 경우

비닐 백은 보안 검사에서 별도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승객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액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8.8 위탁 수하물의 회수 및 전달

8.8.1 8.6.3조에 따라 승객은 도착지 또는 기착지에 도착하는 즉시 위탁 수하물을 회수해야 합니다. 승객이 적정 시간 내에 수하물을 회수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승객에게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탁 수하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항공사는 위탁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8.2 수하물 확인증이나 수하물 식별 태그를 소지자만이 위탁 수하물을 전달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8.8.3 위탁 수하물을 찾으려는 자가 수하물 확인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수하물 식별 태그로 수하물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는 위에 자신의 수하물에 대한 권리를 항공사에 납득시키는 경우에만 해당 수하물을 전달합니다.

8.8.4 전달 시점에 수하물 확인증 소지자가 이의 제기 없이 수하물을 전달 받는 것은 그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부합되도록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8.9 동물

항공사는 동물의 운송을 재량에 따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공사는 승객이 동물을 운송하는데 동의한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동물을 운송합니다.

8.9.1 승객은 개, 고양이, 새나 기타 애완 동물을 적합한 상자에 넣고 (또는 해당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 용기에 운송) 유효한 건강 및 예방 접종 증명서, 입국 허가서, 기타 입국 국가 내지 환승 국가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등을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송이 거부됩니다. 이러한 운송에는 항공사가 정한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 조건은 요청 시 알려 드립니다.

8.9.2 동물이 용기나 사료와 같이 수하물로 인정되는 경우 무료 수하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승객이 해당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초과 수하물이 됩니다.

8.9.3 장애인 승객과 동반하는 안내견은 일반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 외에 무료로 운송되며, 항공사에서 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건은 요청 시 알려 드립니다.

8.9.4 협약의 책임 규정이 운송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항공사는 과실로 인하지 않은 한 운송을 동의한 동물의 상해, 분실,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9.5 항공사는 국가, 주 또는 자치령에서의 동물의 입국 또는 통과에 관한 필수적인 출국, 입국, 건강 및 기타 문서를 구비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동물을 동반하는 자는 그 결과로 인해 항공사에 부과되거나 발생한 벌금, 비용, 손실 또는 책임을 변상해야 합니다.

8.10 공항 보안 직원이 제거하는 품목

해당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항 보안 직원이 승객의 수하물에서 제거하는 품목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9조 - 항공편 일정, 지연 및 취소

9.1 일정

9.1.1 항공편 일정은 비행 항공권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항공사는 합당한 항공편을 통해 승객과 그 수하물을 운송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여행일자에 유효한 공지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항공사가 여행일에 유효한 공지된 일정을 준수하려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는 승객의 비행이 항상 항공권, 일정에 명시된 시간에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간표, 일정이나 다른 곳에 표시된 시간은 통지 없이 수시로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시간표와 공지된 일정은 승객과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시간표 또는 기타 일정 간행물 또는 항공편의 출발 또는 도착 날짜나 시간 또는 그 운항과 관련해 직원, 판매인 또는 대리인이 한 말이나 주장에 포함된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날씨나 기술적인 운영을 포함한 불가항력으로 인해 비행 일정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날씨나 기술적 운영으로 인한 비행 일정 변경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1.2 항공사는 승객의 예약을 접수하기 전에 해당 시점에서 적용 중인 예정된 항공편 시간을 승객에게 통보하며, 이 시간은 항공권에 표시됩니다. 예정된 항공편 시간을 항공권 발권 이후에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승객이 항공사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항공사는 변경 사항을 승객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이후에 항공사가 예정된 항공편 시간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승객에게 허용될 수 없고, 항공사가 승객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 대체 항공편을 예약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제10.2조에 따라 환불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9.2 취소, 노선 변경, 지연 등

9.2.1 항공사는 승객과 수하물을 지연 없이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항공사는 항공편 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항공사는 다른 운송업체 및 또는 항공기로 운항되도록 항공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2.2 규약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일정에 따라 적절하게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거나, 도착지 또는 기착지에 들르지 못하거나, 승객이 예약한 연결 항

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경우 승객의 합리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항공사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2.2.1 좌석이 있는 항공사의 다른 정기 항공편을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조속한 시기에 승객을 운송하고, 필요한 경우 항공권 유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9.2.2.2 적절한 시간 내에 추가 비용 없이 항공사 또는 다른 항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육상 교통 수단으로 승객의 경로를 항공권에 명시된 도착지로 재설정합니다. 수정된 경로의 요금과 수수료가 승객이 지불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항공사는 차액을 환불합니다.

9.2.2.3 승객이 요청하는 경우 환불을 합니다.

9.2.3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항공사는 항공편을 통보 없이 취소, 중단, 항로 변경, 연기 또는 지연 시키거나 다른 항공기 기종으로 대체하거나, 경유지 또는 목적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경우에도 항공사는 10.2조를 근거로 이전 절에 따라 운송, 경로 변경 또는 환불 조치할 하고, 승객에 대해 그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9.2.4 불가피한 상황은 실제, 위협된 또는 보고된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실 (기상 조건, 천재, 공항 폐쇄, 활주로 이상, 파업, 폭동, 시위, 수출금지, 전쟁, 적대행위, 내란이나 안정되지 않은 국제 관계와 같은 불가항력 포함) 및 이러한 사실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연, 요구, 조건, 상황이나 요건, 예상, 예측, 추정하지 못한 사실, 관련 법률이나 인력, 연료나 시설의 부족, 항공사의 노동 분규 등을 포함합니다.

9.2.5 항공사가 항공사의 경영 문제만으로 비행을 지연하는 경우 (불가항력 상황이 아닌). 항공사는 지연 관리에 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교통부장관령 2015년 89호 (PM 89/2015)에 따라 법률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승객에게 지체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a. 31~60분의 지연: 운송업체는 음료수와 스낵 박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b. 61~120분 지연: 운송업체는 음료수와 스낵 박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승객은 운송약관 9조 및 10조에 따라 요청하여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다음 비행편이나 다른 항공사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c. 121~180분 지연: 운송업체는 음료수와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승객은 운송약관 9조 및 10조에 따라 요청하여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다음 비행편이나 다른 항공사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d. 181~240분 지연: 운송업체는 음료수와 스낵 박스,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승객은 운송약관 9조 및 10조에 따라 요청하여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다음 비행편이나 다른 항공사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e. 240분 이상의 지연: 운송업체는 음료수와 스낵 박스,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승객은 300,000 루피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승객은 운송약관 9조 및 10조에 따라 요청하여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다음 비행편이나 다른 항공사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f. 360분 이상의 지연: 운송업체는 음료수와 스낵 박스,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승객은 운송약관 9조 및 10조에 따라 요청하여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다음 비행편이나 다른 항공사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운송업체는 승객에게 숙박을 제공해야 합니다.

9.3 탑승거부 보상

항공사가 사전에 확정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는 해당 법률과 항공사의 탑승 거부

보상 지침에 따라 탑승이 거부된 승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항공사의 탑승 거부 보상 지침 사본은 요청 시 제공됩니다.

10조 - 환불

10.1 항공사는 운임 규칙이나 운송 요율 및 인도네시아 공화국 교통부장관령 2015년 185호 (PM 185/2015)에 따라 항공권 또는 그 미사용 부분을 환불합니다.

10.1.1 본 조항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항공권에 명기된 사람 또는 항공권 비용을 지불한 사람에게 환불을 해야 합니다. 항공권 비용을 지급한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10.1.2 항공권에 명기된 승객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항공권 비용을 지급했고, 항공권에 환불 제한이 있다고 표시된 경우 항공사는 항공권을 지불한 사람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만 환불합니다.

10.1.3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 및 기타 미사용 탑승용 쿠폰이 항공사에 제출되는 때에만 환불이 실행됩니다.

10.2 비자발적 환불

10.2.1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일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항하지 못하거나, 도착지 또는 기착지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승객이 예약된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만든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2.1.1 항공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 금액은 지급된 운임이 됩니다.

10.2.1.2 항공권을 일부 사용한 경우, 환불 금액은 항공권을 이용한 지점까지의 운임과 이미 지불된 운임 사이의 차액 이상입니다.

10.2.1.3 천재와 같은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승객이나 항공권을 전액 지급한 사람에게 환불을 합니다. 단, 환불은 관리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10.3 자발적 환불

10.3.1 항공권이 표기된 승객이 질병으로 인해 여행을 할 수 없고, 의사의 진단서로 질병을 입증할 수 없거나, 승객의 직계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사망하고, 승객이 사망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는 10.2조에 명시된 이유와 다른 이유로 환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0.3.2 승객이 10.2조와 10.3.1조에 규정된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승객 항공권을 환불할 권리가 있는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1.1 국제선

10.3.2.1 항공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 금액은 지불된 금액에서 적절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10.3.2.2 항공권을 일부 사용한 경우 환불 금액은 항공권을 사용한 지점까지의 여행에 적용되는 운임과 이미 지불된 운임 사이의 차액에서 적절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취소 수수료를 제한 금액

입니다.

10.3.1.2 국내선

해당 규정 PM185/2015에 따라, 항공사는 승객이나 항공권을 지급한 사람,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표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환불을 합니다.

비행 ≥ 72시간 전	기본 운임의 75%
비행 48<72시간 전	기본 운임의 50%
비행 24<48시간 전	기본 운임의 40%
비행 12<24시간 전	기본 운임의 30%
비행 4<12시간 전	기본 운임의 20%
비행 < 4시간 전	기본 운임의 10%

승객이 항공권의 환불을 요청하고, 승객이 승객서비스요금 (PSC)를 항공사에게 납부한 경우, 공항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승객은 PSC를 항공사에게 환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승객이 공항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해당 PSC는 공항 운영회사에게 양도됩니다.

항공권을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 항공사는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후 15 영업일 내에 환불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0.4 분실 항공권에 대한 환불

10.4.1 승객이 항공권 또는 그 일부를 분실한 경우, 분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적정한 행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항공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한 이후,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최대한 빨리 환불이 실행됩니다.

10.4.1.1 분실된 항공권 또는 그 일부가 사용되지 않았고, 이전에 환불되거나 교체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항공사의 과실로 인해 제3자가 항공권을 사용하거나 환불 또는 교체를 받은 경우 제외).

10.4.1.2 분실된 항공권이나 그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범위 내에서 환불을 받은 자는 기만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제3자가 분실된 항공권 내지 항공권 일부를 사용한 범위 내에서 (항공사의 과실로 인해 제3자가 항공권을 사용하거나 환불 또는 교체를 받은 경우 제외), 환불 금액을 항공사에 상환할 것을 항공사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10.4.2 항공사 또는 공인 대리점이 항공권 또는 항공권 일부를 분실한 경우 항공사는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10.5 환불 거부권

10.5.1 항공사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는 항공권의 유효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환불 신청을 받는 경우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환불 신청이 이루어진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0.5.2 항공사는 승객이 여행 국가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거나 다른 항공사 또는 다른 수송 수단을 이용해 출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항공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출국 의사의 증빙으로 항공사 또는 해당 국가의 정부 공무원에게 제출된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0.6 통화

모든 환불은 항공권에 대한 구매가 원래 이루어진 국가 및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정부 법률, 규칙 및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앞의 조항에 따라, 환불은 항공권 대금 결제 통화로 대개 이루어지지만 항공사 규정에 따라 다른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7 환불을 담당하는 당사자

자발적 환불은 항공권을 최초로 발급한 항공사 또는 공인 대리점이 할 수 있습니다.

11조 - 탑승 중 행위

11.1 탑승 중의 용인되지 않는 행위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승객이

- a. 항공기, 기내 승객 또는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거나
- b. 승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 c. 흡연, 알코올 또는 마약 복용, 휴대폰 사용을 포함한 승무원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승무원에게 위협적, 욕설 또는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 d. 다른 승객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 e.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의 불편, 불쾌, 피해, 부상 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의 제지를 포함하여,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조치되거나 이후의 운송을 거부당할 수 있으며, 기내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로 인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11.2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해 있는 동안 항공기, 또는 탑승해 있는 일체 개인 또는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의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또는 다른 승객들이 타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항공사는 해당 승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포함해, 그러한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1.2 일반 면책 및 목적지 변경

11.1조에 언급된 승객의 행위로 인해,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승객을 하기시키기 위해 항공기의 목적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승객은 목적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격의 비용, 승객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부상, 손실, 손해나 다른 승객이나 재산의 지연으로 인해 항공사 대리점, 직원, 독립적 계약자, 승객들 및 제3자가 입거나, 발생한 모든 손실을 책임져야 합니다.

11.3 전자기기의 사용

항공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기 탑승 중에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라디오, MP3/ MP4, 카세트,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레이저 제품 및 무선 조종 장난감

및 위키토키와 같은 전송장치를 포함한 전자제품을 탑승 중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항공사가 사용이 금지되었음을 알린 후에는 이들 품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승객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는 비행이 종료되거나 항공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러한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및 심장 박동 조절기의 사용은 허용됩니다.

12조 - 추가 서비스에 대한 합의

12.1 승객을 위해 항공사가 제3자와 함께 항공 운송 이외의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호텔 예약이나 차량 렌트와 같은 제3자가 제공하는 (항공운송 이외의) 운송 또는 서비스를 위한 티켓이나 바우처를 발행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의 대리인으로서만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제3자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12.2 항공사가 승객에게 육상 운송을 제공할 경우 해당 육상 운송에는 다른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항공사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조 - 행정 절차

13.1 승객은 필요한 모든 여행 서류와 비자를 획득하고, 출발, 도착 또는 환승 국가의 모든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여행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13.2 승객이 해당 서류 또는 비자를 획득하지 않거나 해당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요건, 규칙 또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조 - 연계 항공사

항공사와 다른 항공사가 한 개의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근거하여 함께 운항하는 경우 조약의 목적을 위해 상기 운항은 하나의 단일 운항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승객은 15.5.1조에 유의해야 합니다.

15조 - 손해 배상 책임

15.1 적용

승객의 운송 및 수하물 손해배상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국제선의 경우 협약, 국내선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책임은 승객이 탑승실을 떠나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 시작하여 승객이 목적

지 공항의 도착 터미널에 들어갈 때 종료됩니다. 위탁 수하물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항공사가 승객의 탑승 수속시 위탁 수하물을 받은 후 시작되고 위탁 수하물을 승객이 받을 때까지 종료됩니다.

승객의 여정에 관련된 각 운송업체의 책임은 자신의 운송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공사의 책임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5.2 국내/ 비-협약

항공에 대한 인도네시아 법 2009-1호에 관한 고시 및 장관령 OM77/2011: 승객의 여정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선 운송이 아닌 국내 운송인 경우, 항공에 관한 인도네시아 법 2009-1호의 규정이 (모든 실행 규정과 함께) 승객의 운송에 적용되고, 사망, 영구 장애나 부상, 수하물의 분실이나 파손 및 지연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2.1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승객의 사망, 영구 장애나 부상에 대한 항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재무적인 한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1,250,000,000 루피 - 사고로 인해 승객이 사망한 경우

b. 500,000,000 루피 - 항공기 탑승 중의 또는 환승을 포함한 이륙이나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승객의 사망

c. 1,250,000,000 루피 - 사고로 인해서만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 최대 60 영업일 이후 의사가 진술한 승객의 전체 영구 장애.

전체 영구 장애란 양 눈의 상실 (시력), 양손과 다리의 골절, 손목이나 발목 위의 한 손이나 한쪽 다리의 상실, 한쪽 눈의 상실, 손목이나 발목 이상의 한 손이나 다리의 골절을 의미합니다.

사고로 인한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후 최대 60 영업일 이후 의사가 진술한 승객의 부분 장애의 경우, 그 책임은 항공운송책임에 대한 인도네시아 교통부 규정 2011-77호 ("PM77/2011) 및 부분 장애 책임에 대한 부록을 참조합니다.

d. 최대 200,000,000 루피 - 사고로 인해 승객이 입고, 입원이 필요하고, 환자로서 또는 외래 환자로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승객의 부상. 이러한 채무의 지급은 의료비 영수증에 의한 실제 치료 증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15.2.2 위탁 수하물: 위탁 수하물에 대한 항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재무적인 한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200,000 루피/ 킬로그램 및 최대 4,000,000 루피 - 승객의 위탁 수하물이나 상품의 분실이나 위탁 수하물의 파손

b. 승객이 입은 위탁 수하물의 손해배상은 위탁 수하물의 유형, 형태, 크기, 브랜드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c. 최대 3일 동안 하루 200,000 루피 - 승객이 입은 위탁 수하물 운송의 지연

15.2.3 화물 (우편물, 항공기 필수품, 위탁 수하물, 휴대 수화물 또는 확인되지 않은 수화물을 제외한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여 항공사가 운송하는 모든 수하물): 항공사의 화주에 대한 화물 손해배상 책임은 재무적인 한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100,000 루피/ 킬로그램 - 화물의 분실이나 파손

b. 50,000 루피/ 킬로그램 - 화물 상품이나 화물의 부분 또는 전체 파손

c. 화주가 항공운송장에 화물의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고, 항공사가 해당 금액을 인정하고, 화물

을 운송한 경우, 화물에 대한 채무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항공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
15.2.4 제3자에 대한 책임 (계약을 기준으로 항공사의 항공기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항공사 운영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법률적 기관)

- a. 500,000,000 루피 - 항공기 이륙 및 착륙, 항공기 사고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낙하한 물체로 인한 제3자의 사망
- b. 750,000,000 루피 - 항공기 이륙 및 착륙, 항공기 사고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낙하한 물체로 인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 최대 60 영업일 이후 의사가 진술한 승객의 전체 영구 장애.

항공기 이륙 및 착륙, 항공기 사고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낙하한 물체로 인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 최대 60 영업일 이후 의사가 진술한 승객의 부분 장애의 경우, 그 책임은 항공운송책임에 대한 인도네시아 교통부 규정 2011-77호 ("PM77/2011) 및 부분 장애 책임에 대한 부록을 참조합니다.

- c. 최대 100,000,000 루피 - 사고로 인해 승객이 입고, 입원이 필요하고, 환자로서 또는 외래 환자로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승객의 부상. 이러한 채무의 지급은 의료비 영수증에 의한 실제 치료 증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 d. 제3자의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한도로 규정되었습니다.
 - 50,000,000,000 루피 - 최대 30인승 항공기
 - 100,000,000,000 루피 - 30~70인승 항공기
 - 175,000,000,000 루피 - 70-150인승 항공기
 - 250,000,000,000 루피 - 150인승 이상 항공기

15.3. 국제/ 협약 대상

출발지 국가와 다른 국가의 최종 목적지나 중간 기착지가 관련된 여행을 하는 승객은 바르샤바 협약이나 몬트리올 협약으로 알려진 국제 협약들이 승객의 여행에 적용되고, 이들 협약들이 사망, 부상, 수하물의 분실이나 파손, 지연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에 적용되고, 책임을 제한한다고 통지를 받습니다.

15.3.1 바르샤바 시스템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책임 한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i) 협약에 대한 헤이그 프로토콜이 적용되는 경우 사고로 인한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책임 한계는 16,000 SDR 또는 오직 바르샤바 조약만이 적용되는 경우 8,300 SDR. 당 항공사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포기합니다.
 - (ii)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실이나 지연의 경우 17 SDR/kg, 기내 반입 수화물의 경우 332 SDR
 - (iii) 항공사는 지연에 의해 발생한 손해도 책임을 집니다.
- *) SDR의 환율은 사고가 발생한 날짜의 해당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5.3.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책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사고로 인한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항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재무적인 한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률, 협약이나 계약에 의해 정의됩니다.

최대 113,100 SDR의 손해배상에 대해, 항공사는 기여한 부주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외하지 않습니다. 당 항공사가 과실이 없거나 손해가 제3자의 과실이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113,100 SDR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i) 수하물의 파괴, 분실, 파손, 지연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승객 당 1,131 SDR이 적용됩니다.

(iii) 승객 여정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승객 당 4,694 SDR이 적용됩니다.

*) SDR의 환율은 사고가 발생한 날짜의 해당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5.3.3 당 항공사는 항공사나 대리점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입증하여 항공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15.3.4 손해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승객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거나 기여하였음을 항공사가 입증하는 경우, 항공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항공사의 책임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5.3.5 항공사는 승객이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비행 중에 해당 승객을 책임지고, 도울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를 동반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시할 수 있는 승객을 제외하고, 아픈 승객을 책임지지 않으며,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5.3.6 항공사는 사고가 항공사, 항공사가 채용한 자 또는 대리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지 않거나 사고가 승객이나 제3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서만 발생한 경우 비행 중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사망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인한 승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3.7 위탁 수하물 및 기내 반입 수화물에 대한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책임

15.3.7.1 항공사는 항공사나 그 공인 대리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항공사가 인정하거나 또는 영국적인 법률적 효력이 있고, 보상이 승객이 입은 실제 손실과 동일하게 설정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기내 반입 수하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3.7.2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또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한 작위나 부작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 수하물 손해배상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른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책임의 한계가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다른 한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승객의 위탁 수하물 중량이 수하물 검사에서 기록되지 않은 경우, 위탁 수하물의 총 중량은 해당 운송 등급에 대한 무료 수하물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15.3.7.3 항공사는 승객의 수하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객은 자신의 수하물이 항공사의 재산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입힌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15.3.7.4 항공사는 깨지기 쉽거나, 상하기 쉬운 품목, 귀중품을 포함하여 8.3조에 따라 위탁 수하물에 포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5.4 일반 조항

15.4.1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의 운송을 위해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수하물 검사를 하는 경우,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의 대리인의 역할만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수하물의 경우, 승객은 처음 또는 마지막 항공사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5.5.2 승객이 관련 법률 또는 정부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5.3 항공사의 책임은 입증된 손해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간접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5.5.4 항공사는 승객의 수하물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에 의한 해당 승객의 부상 또는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지품이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지품 또는 항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승객은 항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지출 경비에 대해 항공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15.5.5 나이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본인에게 위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승객이 탑승하는 경우, 항공사는 그러한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의 악화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하는 모든 질환, 부상 또는 장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5.6 본 운송 약관과 책임 배제 규정 또는 책임 제한 규정을 비롯한 운송 계약은 항공사에 적용되는 정도와 동일하게 항공사의 공인 대리점, 사무원, 직원 및 대표자에게 적용됩니다. 항공사, 공인 대리점, 직원, 대표자 등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전체 금액은 항공사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5.7 달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운송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조약 또는 해당 법률에 따른 항공사의 책임 배제나 제한을 유예하지 않습니다.

15.5.8 본 운송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승객의 사망, 부상, 상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거나 지급한 공공 사회 기구나 개인에 대한 조약이나 해당 법률에 따른 항공사의 책임이나 변호의 배제나 제한을 유예하지 않습니다.

16조 - 클레임 및 소송 시효

16.1 클레임 통지

승객이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전달 시 수하물 보관증을 가진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하물을 수령한 사실은 수하물이 운송 계약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전달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위탁 수하물의 손해와 관련하여 클레임 또는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승객은 적어도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를 발견하는 즉시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의 지연과 관련하여 클레임 또는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승객은 수하물을 전달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승객의 수하물은 수하물을 승객이 수취한 날부터 14일 이후에도 찾지 못한 경우 분실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실된 수하물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승객이 14일이 경과한 후 항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국내선의 경우, 위탁 수하물의 손해와 관련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승객은 위탁 수하물을 수령할 때 제기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의 지연이나 미수령에 대한 클레임은 위탁 수하물을 인도받을 때 제기해야 합니다. 승객이 수하물을 수취한 날부터 14일 이후에도 찾지 못한 경우 분실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실된 수하물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승객이 14일이 경과한 후 항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6.2 소송 제한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또는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되지 않는 경우 소멸됩니다. 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심리할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17조 - 수정 및 유예

항공사의 대리점, 직원 또는 대리인은 본 약관의 조항을 변경, 수정 또는 유예할 권리가 없습니다.

승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사가 적용 또는 채택하는 기타 규정 및 조건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규정 및 조건은 수시로 변경되며 다른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됩니다.

- (i) 동행자가 없는 미성년자, 임산부 및 환자인 승객의 운송
- (ii) 전자 기기 및 품목의 사용 제한
- (iii) 알코올 음료의 기내 섭취

이러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항공사에 요청 시 제공됩니다.

2016년 7월 19일, 자카르타

이사회 승인

이사

PT GARUDA INDONESIA (PERSERO) Tbk.

성명: M. Arif Wibowo

직위: 사장 및 CEO

성명: Helmi Imam Satriyono

직위: 재무 및 위험관리 총괄 이사

성명: Iwan Joeniarto

직위: 유지보수 및 IT 총괄 이사

성명: Novianto Herupratomo

직위: 운영 총괄 이사

성명: Agus Toni Soetirto

성명: Linggarsari Suharso

직위: 이사

직위: 인사 및 총무 총괄 이사

성명: Nicodemus Panarung Lampe

직위: 서비스 총괄 이사

제안부서:

VP CORPORATE SECRETARY
& INVESTOR RELATIONS

VP REVENUE MANAGEMENT

HERI AKHYAR

AGUS IRIANTO

VP GROUND SERVICES

VP DIGITAL BUSINESS

PIKRI ILHAM KURNIANSYAH

WIBAWA PRASETYAWAN

SENIOR MANAGER COMMERCIAL QUALITY ASSURANCE

PRIMA DEFFINIKA